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裴嬉娟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의 추구를 뒷받침할 政策研究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7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1992년 1월 政策研究를 주요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현재 30~40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포함하여 70여명의 연구원이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 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여건, 동북아지역협력 및 통일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쳐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國際巨視金融室, 貿易投資政策室, 세계지역연구센터 (東北亞팀, 東西南亞팀, 美洲팀, 유럽팀),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東北亞연구개발센터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北京事務所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통상팀과 FTA연구팀, 통일국제협력팀 등 시의적절한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되며, 장·단기 研究報告書, 월간 『KIEP세계경제』,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는 본 연구원 KIEP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ep.go.kr>)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관심있는 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院長 安 忠 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02)3460-1001, 1114 / FAX : 02)3460-1122, 1199
URL : <http://www.kiep.go.kr>

지역리포트 02-06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裴 嬉 娟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문요약

아랍에미리트연합(United Arab Emirates: UAE, 이하 UAE로 표기)은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등 7개 에미리트라는 토후국간의 연합체로서, 사우디, 카타르 및 오만과 접경한 걸프만 연안에 위치한 소국이다. 동시에 세계 석유매장량의 약 10%를 보유하고 있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하나로서 여타 대부분의 중동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원유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이라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 전반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UAE 연방 정부는 지난 30여년간 제조업 육성을 위해 68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200억 달러 상당의 총투자에 의해 1,000개가 넘는 제조업 공장이 건설되었다. 석유와 관련된 제조업은 아부다비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석유 제조업은 비석유산업의 육성에 적극적인 두바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UAE의 양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각기 행정과 경제 수도로서 매우 상이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아부다비의 경우 원유를 중심으로 한 광업 및 채석업이 전체 GDP의 40%에 이르고, 제조업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두바이는 자유무역지대의 활성화로 인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운송·통신 부문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잇고 있다. 이는 아부다비가 석유 및 관련 산업에 특화하고 있다면, 두바이는 비석유산업 주도하에 유통, 금융, 관광 등 고도 서비스산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UAE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두바이 정부는 1996년에 2011

년까지 석유의존 경제구조로부터 완전탈피를 주요 목표로 하는 장기 경제 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 비석유부문 수출이 최근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점유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본 법률과 체계를 정비하여 최고 수준의 사회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매력적인 특권과 투자 유인을 적극 제공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UAE는 외국인투자법을 따로 마련해놓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주요법규로 연방 회사법, 에이전시법, 연방 산업법, 정부 입찰법 등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은 이에 따른 소정의 해당 절차를 거쳐 상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더구나 UAE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개인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및 사회보장세 등의 기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금융 및 석유관련 기업에 대한 법인세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외환에 관해서도 매우 자유로워 UAE의 외국인투자여건은 기타 중동지역 국가들에 비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유무역지대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두바이의 Jebel Ali Free Zone은 100% 외국인투자 및 경영권 행사 허용, 소득세·법인세 등 영업 관련 세금 전액 면제, 이윤송금 자유화, 현대적인 교통·통신망 등을 바탕으로 총 100여 개국에서 2,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진출하여 세계적인 자유무역지대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설립된 Dubai Airport Free Zone과 새로운 Dubai Technology, E-Commerce & Media Free Zone으로 불리는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은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켜, 2002년말 현재 UAE 외국인투자의 95% 이상이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UAE의 자유무역지대 확대 추진은 유럽과 아시아·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기존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금융 및 재정 중심

지로서의 기능 확대를 도모하고, 세원의 다양화와 함께 석유일변도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UAE 정부는 현재 UAE내 에미리트의 경쟁적인 자유무역지대 개발확대에 따른 부작용 등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각 자유무역지대 특성을 살려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중동지역의 불안정으로 인해 개발자금 확보의 관건인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또 외국기업의 성공적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 례

| | |
|---------------------------------|----|
| 국문요약 | 1 |
| 제1장 머리말 | 7 |
| 제2장 UAE의 최근 경제동향 및 개발정책 | 10 |
| 1. 경제현황 및 특징 | 10 |
| 2. 최근 경제개발정책 | 25 |
| 3. 최근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 | 29 |
| 제3장 UAE의 외국인투자 환경 | 31 |
| 1. 외국인투자 관련법 | 31 |
| 2. 투자절차 | 33 |
| 3. 세제 및 외환관리제도 | 36 |
| 4. 분쟁해결 | 37 |
| 5. 고용 및 임금제도 | 38 |
| 제4장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43 |
| 1. 주요 자유무역지대 현황 | 43 |
| 2. 자유무역지대의 회사설립 규정 | 48 |
| 제5장 맺음말 | 52 |
| 참고문헌 | 54 |

표 차례

| | |
|---|----|
| <표 2-1> UAE의 주요 경제지표 | 11 |
| <표 2-2> UAE의 산업부문별 GDP 구성 | 13 |
| <표 2-3> UAE의 지역별 수출입 현황 | 19 |
| <표 2-4> UAE의 에미리트별 개관(1999년 기준) | 21 |
| <표 2-5>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부문별 GDP 구성(1999년 기준) ... | 22 |
| <표 2-6> UAE의 주요 경제전망 지표 | 24 |
| <표 2-7> UAE의 ODI, FDI 현황 | 29 |
| <표 4-1>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대 내 행정비용 및 이용료 현황 .. | 46 |
| <표 4-2> 특별인가가 요구되는 업종 | 50 |

그림 차례

| | |
|--|----|
| <그림 2-1> UAE의 GDP, 수출, 석유수출, 유가 비교 | 14 |
| <그림 4-1>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대의 지역별 진출 업체수 | 47 |
| <그림 4-2>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대의 업종별 비중 | 48 |

제1장 머리말

아랍에미리트연합(United Arab Emirates: UAE, 이하 UAE로 표기)은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등 7개 에미리트라는 토후국간의 연합체로서, 사우디, 카타르 및 오만과 접경한 걸프만 연안에 위치한 소국이다. 동시에 세계 석유매장량의 약 10%를 보유하고 있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하나로써 여타 대부분의 중동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원유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이라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전반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이같은 석유일변도의 경제적 취약성에서 탈피하고 경제 발전의 다각화를 꾀하기 위해 UAE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펴기 시작하였고, 그 성과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비록 석유와 관련 산업은 여전히 UAE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을 포함한 제조업 분야가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자본투자가 많은 고부가가치 산업 역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원유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두바이는 1980년대부터 비석유 부문 육성전략을 강력히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비석유 부문 수출이 최근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점유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본 법률과 체제를 정비하여 최고 수준의 사회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매력적인 특권과 투자 유인을 적극 제공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대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Jebel Ali Free Zone과 최근에 설립된 Dubai Airport Free Zone 그리고 새로운 Dubai Technology, E-Commerce & Media Free Zone으로 불리는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은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고품질의 상품을 경쟁적인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UAE를 주요 산업중심지이자 명실상부한 세계 중계무역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최근 미국 Heritage 재단은 전세계 156개국의 무역·통화정책, 외국인투자, 정부개입 등 10개 항목의 경제활동 자유도를 평가한 2003년도 세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¹⁾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1.45점과 1.50점으로 1,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룩셈부르크·뉴질랜드가 1.70점으로 공동 3위를 기록하였으며, UAE는 2.20점으로 중동지역에서 바레인에 이어 두 번째(전체 24위)로 경제의 자유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화정책 및 외국인투자 부문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UAE의 투자여건은 기타 중동지역 국가들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최근 UAE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현황과 긍정적 변화를 제도적 측면에서 정리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 유치는 단순히 자본 및 자본재의 유입뿐만 아니라 경영, 기술 등을 함께 전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중동의 허브국가라고 할 수 있는 UAE의 사례를 정리한 본 보고서가 한국이 구상 중인 동북아 중심국가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며, UAE의 외국인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 기업의 UAE 진출을 더욱 활성화시키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먼저 제2장에서 UAE의 최근 경제동향과 경제개발정책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UAE의 외국인투자 환경을 투자 관련법과 제

1) 세계 경제자유지수(IEF)는 美 Heritage 재단이 Wall Street Journal과 공동으로 1995년이래 150~160여 개국의 부문별 자유도를 조사하여 각 부문별로 1~5 점(낮을수록 양호)까지의 점수를 산정하여 이를 평균한 수치이다.

도를 중심으로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외국인투자의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대의 투자현황과 투자절차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음말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제2장 UAE의 최근 경제 동향 및 개발정책

1. UAE의 경제현황 및 특징

가. 최근 경제 현황

UAE는 비록 인구 약 270만의 작은 국가이나, 풍부한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2001년 현재 1인당 GDP 24,138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산유 경제부국이다. 실질 GDP 증가율은 1998년 한때 -5.0%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999년 이후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2000년의 경우, 6.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석유 수출 수익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UAE의 경제는 크게 막대한 산유량을 보유한 아부다비(Abu Dhabi)와 비석유산업이 발달한 두바이(Dubai), 그리고 경제기초가 취약한 나머지 5개 에미리트로 구분된다. 특히, 최근 두바이 지역의 경제특구인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대(Jebel Ali Free Zone: JAFZ, 이하 JAFZ로 표기)의 개발을 기점으로 소득세 면제, 자유로운 송금 허용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통한 외국인 기업 유치에 석유수출에만 의존하던 취약한 UAE 경제구조의 변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UAE의 물가상승률은 최근 1999년을 제외하고는 2.0%를 밑도는 수준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편이다. 1999년의 경우 3.0%를 기록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높은 유가에 의한 소득 상승과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에 그 원인이 있다.

수출은 2001년 당시 43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336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무역수지에 있어서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에 힘입어 경상수지도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1년에만 13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UAE의 환율은 달러당 3.67디램(Dirham: Dh, 이하 디램 또는 Dh로 표기)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고정환율제도는 UAE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과 수입산업의 교역조건 안정화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정 환율과 최근 정책적으로 실시 중인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해 이자율이 민감하게 변동하여 자본의 유동성을 통제하려고 하는 UAE 중앙은행의 규제정책에 있어 한계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디램을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 엔 등의 다른 기축 통화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고정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표 2-1) UAE의 주요 경제지표

| | 단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¹⁾ |
|------------|-------|----------|----------|----------|----------|--------------------|
| 인구 | 백만 명 | 2.5 | 2.6 | 2.6 | 2.7 | 2.7 |
| GDP(명목) | 십억 달러 | 46.5 | 51.9 | 60.7 | 64.0 | 67.7 |
| 1인당GDP(명목) | 달러 | 18,514.5 | 20,262.5 | 23,265.0 | 24,138.1 | 25,084.7 |
| 실질GDP증가율 | % | -5.0 | 3.5 | 6.5 | 1.0 | 2.5 |
| 소비자물가상승률 | % | 0.3 | 1.8 | 3.0 | 1.2 | 2.1 |
| 수출 | 십억 달러 | 33.9 | 36.5 | 45.3 | 43.3 | 43.9 |
| 수입 | 십억 달러 | 32.6 | 31.7 | 32.6 | 33.6 | 34.9 |
| 경상수지 | 십억 달러 | 2.5 | 6.1 | 17.2 | 13.1 | 8.8 |
| 평균환율 | Dh/\$ | 3.67 | 3.67 | 3.67 | 3.67 | 3.67 |

주: 1) 전망치임.

자료: DRI · WEFA, The World Overview, June 2002.

UAE의 경제를 종합해보면, 270만 명의 적은 인구조로 인해 내수시장이 작아 주로 수출산업에 많이 의존하는 경제이며, 수출 중에서도 특히, 석유 수출에 치중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 전체가 유가 변동 및 외부 충격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시도되고 있는 자본 자유화 및 외국인 자유 투자지역의 유치는 취약한 UAE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며, 그러한 성과는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나. 산업 및 교역구조

1) 주요 산업별 현황

UAE는 주요 석유생산국이자,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으로 세계 석유매장량의 약 10%를 보유하고 있다. 석유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UAE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유와 관련 산업은 UAE 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7개 에미르트로 구성된 UAE에서 석유의 90%는 아부다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두바이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최대 원유 생산지인 아부다비는 막대한 석유판매 수입을 바탕으로 연방재정의 약 80% 이상을 기여하고 있으며, UAE의 정치·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석유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두바이는 비석유 산업의 육성과 함께 두바이를 중계무역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나머지 5개 에미리트 지역은 취약한 경제기반으로 인해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하다.

〈표 2-2〉 UAE의 산업부문별 GDP 구성

(단위: 백만 Dh)

| 구 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
| 원 유 | 57,123 (32.0) | 53,514 (29.6) | 36,057 (20.8) | 48,726 (25.6) | 75,620 (33.9) |
| 제 조 업 | 17,926 (10.1) | 20,230 (11.1) | 22,458 (13.0) | 24,009 (12.6) | 24,800 (11.1) |
| 농업·축산업·어업 | 5,052 (2.9) | 5,503 (3.0) | 6,325 (3.6) | 6,541 (3.4) | 6,720 (3.0) |
| 가스·전기 | 3,466 (1.9) | 3,729 (2.0) | 3,841 (2.2) | 4,014 (2.1) | 4,190 (1.9) |
| 건 설 | 14,491 (8.2) | 15,612 (8.6) | 16,392 (9.5) | 16,319 (8.6) | 16,600 (7.4) |
| 운송·통신 | 11,184 (6.3) | 11,650 (6.4) | 13,347 (7.7) | 13,818 (7.3) | 15,170 (6.8) |
| 상업·관광업 | 19,665 (11.2) | 21,024 (11.6) | 20,931 (12.1) | 21,690 (11.4) | 26,470 (11.9) |
| 금융·보험 | 19,883 (5.6) | 10,408 (5.8) | 11,677 (6.7) | 12,174 (6.4) | 12,660 (5.7) |
| 부 동 산 | 16,864 (9.6) | 17,351 (9.6) | 17,496 (10.1) | 17,421 (9.1) | 17,910 (8.0) |
| 정부 서비스 | 17,644 (10.0) | 18,637 (10.3) | 20,010 (11.6) | 20,873 (10.9) | 21,500 (9.6) |
| 합계 | 175,778 (100.0) | 180,630 (100.0) | 173,147 (100.0) | 190,455 (100.0) | 222,980 (100.0) |

주 : 괄호안은 전체대비 비율(%).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Profile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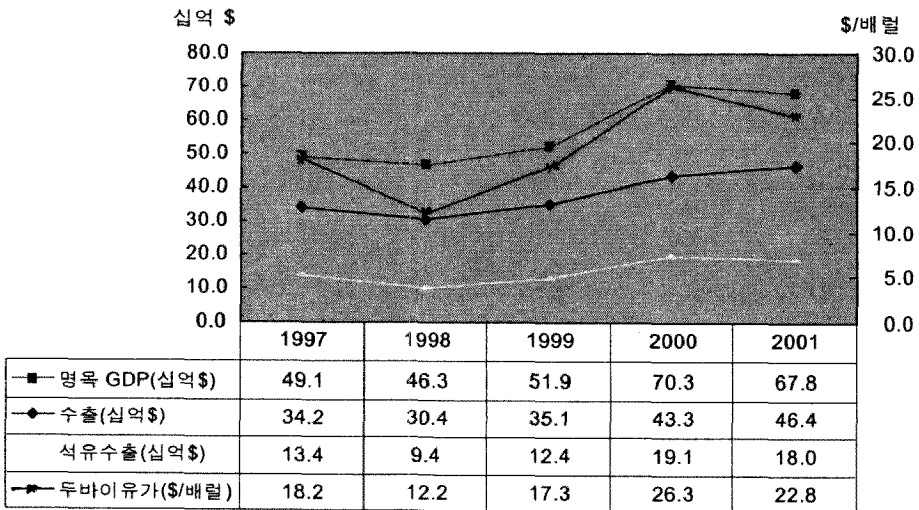
가) 석유 및 에너지부문

UAE 경제의 석유의존도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지속적인 감소

세를 보여, 1980년에 GDP의 약 60%를 차지하던 석유부문은 1993년 35.8%, 1998년 20.8%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국제원유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석유판매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석유산업의 GDP 구성비율은 33.9%로 다시 증가하였다. 더욱이 대부분의 비석유 경제부문이 정부의 재정지출 및 석유판매 수입과 연관된 산업분야이므로 UAE 경제에 대한 석유산업의 위치는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UAE 경제는 국제원유가격의 변동과 석유판매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원유가격이 하락한 1980년대 하반기에는 경제 침체를 경험하였고,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한 국제원유가격의 상승기에는 경제회복을 경험하였다. 또한 1998년에 배럴당 10달러 정도로 세계유가가 하락하자 이러한 경향과 유사하게 경제성장률이

(그림 2-1) UAE의 GDP, 수출, 석유수출, 유가 비교



자료: 유가는 한국석유공사, 기타 지표는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Middle East Monitor December 2002.

급격히 하락하였다. 1998년 실질 GDP성장률은 -5% 였으며, 1998년과 1999년 상반기에는 1968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재정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9년 하반기부터 국제원유가격이 회복되고 2000년 배럴당 30달러에 육박하는 고유가 기조가 유지되자 UAE경제는 7.9%의 실질 GDP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급속한 회복세를 보였다. 2001년에 들어와서는 유가가 다시 배럴당 23달러로 전년대비 13% 가량 하락하면서 실질 GDP 성장률이 1%에 머물렀다.

<그림 2-1>은 UAE의 명목 GDP와 수출, 석유수출의 최근 5년간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UAE의 수출과 GDP는 유가의 흐름과 상당한 동행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UAE의 수출은 전체 GDP의 약 2/3 가량을 차지하며, 석유수출이 수출의 1/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석유수출에 크게 의존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석유수출은 국제 유가추이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유가와 수출 GDP가 서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그림 2-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UAE의 경제는 국제유가를 결정하는 외부 환경에 의해 많이 좌우되며, 유가의 급변성으로 인해 구조적 불안요인을 상당부분 안고 있는 경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높은 원유가격과 수요 증가 전망으로 2003년에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국제유가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제조업 부문

비록 석유생산이 UAE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을 포함한 제조업분야는 GDP의 약 11%에서 13%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UAE 연방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제조업 육성을 위해 68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200억 달러 상당의 총투자에 의해 1,000개가 넘는

제조업 공장이 건설되었다. 석유와 관련된 제조업은 아부다비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석유 제조업은 석유생산량이 감소하여 비석유산업의 육성에 적극적인 두바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알루미늄 산업은 UAE 제조업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UAE의 알루미늄 생산은 두바이 정부 소유의 두바이 알루미늄(Dubai Aluminium: Dubal, 이하 Dubal로 표기)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Dubal은 두바이 지역 비석유분야 수출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Dubal의 생산시설 증설과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알루미늄 산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1999년에 Dubal은 연간 생산능력을 402,000톤에서 536,000톤으로 증설하였으며, 이로 인해 Dubal은 세계 10대 알루미늄 생산업체가 되었다. 또한 Dubal은 JAFZ와 Dubai Investment Park에 추가적인 생산설비 증대를 추진하고 있어 UAE 제조업에서 알루미늄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와 석유화학부문도 비교적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비록 고부가가치산업인 정유 및 석유화학분야의 발달이 늦게 시작되었지만 Ruwais지역에 UAE 최초의 대규모 석유화학 공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와 스칸디나비아에 소재한 석유회사인 Borealis가 6:4의 지분을 소유한 Abu Dhabi Polymers Company가 설립되었다. 또한 2000년 6월에는 ADNOC가 Ruwais지역에 건설중인 정유설비의 1차 공정이 완료되어, 1일 14만 배럴의 정제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UAE의 또 다른 정유분야 기업인 Umm al-Nar는 1993년 이후 하루 9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정제하고 있으며, 2003년 상반기를 목표로 설비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UAE 연방정부는 민간부문의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UAE 산업은행의 저리 융자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정유 및 석유화학부문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기타 산업부문

농업은 사막과 거친 기후로 인해 UAE에서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GDP의 3% 정도로 매우 낮다. 그러나 많은 UAE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농업부문은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많은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정부는 농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매우 낮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정치적 이유로 농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어업은 전통적으로 UAE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어업자원 보존에 치중하고 있다. UAE의 연간 어업량은 96,000 톤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국내소비량과 거의 일치한다.

건설과 부동산은 UAE 비석유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1998년 건설과 부동산(비즈니스 서비스 포함)이 실질 GDP에서 차지한 비중은 19.6% 였으며, 2000년에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 경기의 호전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신규 산업설비 및 호텔 건설이 크게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 특히 국제원유가격 상승에 힘입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 지난 2000년 이후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건설부문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실례로 두바이 지역에서는 16억 달러가 투자되는 Dubai Festival City와 30억 달러가 투자되는 Palm Tree Island 프로젝트 등의 대규모 건설이 진행 중이다. 또한 아부다비지역에서는 석유 및 천연가스와 관련된 각종 설비 공사가 진행 중이며, 10억 달러가 이미 투입된 Saadiyat섬 지역의 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한 아부다비섬과 본토를 연결하는 세 번째 다리 건설, 아부다비 무역센터 건설, 아부다비 투자청의 신규사옥 건설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과열되었던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침체가 우려되고 있어 UAE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석유부문이 급격한 성장을 보였던 지난 2000년의 경우에도 건설과 부동산 부문은 1998년과 비교하여 비슷한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두바이 지역을 중심으

로 부동산의 초과 공급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부문의 거품이 빠진 이후 드러나게 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중동 걸프만 지역의 관광중심지로 성장하려는 두바이의 대규모 관광산업 육성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Festival City와 Palm Tree Island 건설 프로젝트는 관광산업 육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함께 Mohammed Al Otaibi그룹이 3천 2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2001년부터 두바이에 건설중인 Snow World는 2003년 상반기에 개장할 예정이다. 이러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두바이 지방정부는 현재 연간 3백만명 정도의 관광객을 오는 2010년까지 1천 5백만 명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여 소규모 상업이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소매 상업분야의 급격한 성장은 많은 쇼핑센터의 건설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두바이는 소매점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1996년 3월 이후 Dubai Shopping Festival을 매년 한 달간 개최하고 있으며, 관광분야의 호텔, 식당, 항공사와 연계하여 중동지역이나 유럽에서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 대외무역구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UAE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수출에 힘입어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재수출(re-export trade)부분의 확대로 비석유 분야의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알루미늄과 섬유이며, 국내 생산 비석유제품의 수출은 1994년과 2000년 사이에 50억 달러에서 109억 달러로 두 배 증가하였다. IMF 통계에 따르면 2000년 UAE의 재수출은 137억 달러에 달하여 1994년의 84억 달러에 비해 63% 증가하였다. UAE의 지역별 수출의 특징은 그 수출이 집중되는 지역이 원유수출의 도착지와 일치한다는 점이며, 수출액이 유가변동에 따

라 움직인 결과 전체수출액이 아시아 및 일본지역으로의 수출액과 함께 움직인다는 점이다. 즉, 중동산 원유를 많이 소비하는 동북아 국가 및 아시아권 국가로의 수출이 전체수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여타지역은

〈표 2-3〉 UAE의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 수출 > | | | | | |
| 전 체 | 31,262 | 25,885 | 27,774 | 41,270 | 40,113 |
| 아시아(일본제외) | 9,147 | 7,075 | 8,242 | 13,421 | 13,227 |
| 일 본 | 11,190 | 7,583 | 8,089 | 13,468 | 11,682 |
| 중동지역 | 2,661 | 3,325 | 3,331 | 4,023 | 3,960 |
| 유럽연합 | 1,448 | 1,601 | 1,836 | 2,018 | 2,286 |
| 북미지역 | 887 | 652 | 690 | 1,003 | 1,214 |
| 아프리카 | 724 | 615 | 570 | 718 | 745 |
| 오세아니아 | 552 | 264 | 248 | 684 | 546 |
| 유럽(유럽연합제외) | 302 | 279 | 304 | 336 | 359 |
| 남미지역 | 26 | 38 | 22 | 74 | 139 |
| < 수입 > | | | | | |
| 전 체 | 22,970 | 24,728 | 34,698 | 39,715 | 42,884 |
| 아시아(일본제외) | 7,564 | 7,661 | 10,613 | 13,081 | 13,910 |
| 유럽연합 | 6,992 | 8,065 | 11,234 | 12,407 | 13,584 |
| 중동지역 | 1,703 | 1,830 | 4,108 | 5,661 | 5,534 |
| 북미지역 | 2,738 | 2,686 | 3,085 | 2,672 | 3,047 |
| 일 본 | 2,260 | 2,606 | 2,786 | 2,785 | 2,819 |
| 유럽(유럽연합제외) | 484 | 488 | 1,096 | 1,024 | 1,568 |
| 오세아니아 | 467 | 478 | 678 | 748 | 803 |
| 남미지역 | 249 | 254 | 316 | 461 | 684 |
| 아프리카 | 222 | 237 | 271 | 334 | 321 |

자료: IMF(2000),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통상적인 거래형태를 취한다고 보여진다. 2001년의 경우 수출상대국 1위는 일본, 2위는 한국, 3위는 인도가 차지하였다. 한편, UAE의 지역별 수입의 특징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동, 유럽연합, 일본과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원자재를 수출하고 고급소비재와 자본재를 수입하는 수출입구조의 특성상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등지에서 주로 수입하는 형태를 취한다. (<표 2-3> 참조)

지난 2001년 3월 UAE는 아랍자유무역지역(The Arab Free Trade Area)의 창설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아랍자유무역지역은 2005년에 효력을 발휘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수입관세는 5.5%~7.5%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것이다. 이에 따라 UAE는 현재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4%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향후 이를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0년대 이후 걸프만 인근 국가들이 추진해 온 EU와의 경제공동체간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공동체간 자유무역이 실현되면, UAE 석유화학산업체의 EU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EU와의 협상이 단기간에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아랍자유무역지역 회원국의 관세인하 문제 또한 장애물이 산재해 있다.

3) 에미리트별 특징

UAE의 7개 에미리트는 석유생산의 지역적 편중에 따라 인구, 산업생산, 소득수준, 발전 정도 등에서 매우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당 GDP는 막대한 산유량을 보유한 아부다비가 26,158달러로 가장 높고, 두바이와 샤르자가 각각 16,164달러와 10,120달러를 기록하며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샤르자의 경우, 과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2) UAE는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 또는 고관세를 부과하여, 정부 및 외교관용 수입상품이나 원산지가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 국가 상품인 경우에는 무관세를, 담배나 주류의 경우 각각 90%와 55%의 특별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발생한 높은 부채로 인해 경제개발이 그 동안 더뎠던 것이 사실이나, 최근 부채 리스케줄링과 가스개발사업 추진 및 제조업 발전 등에 힘입어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표 2-4〉 UAE의 에미리트별 개관(1999년 기준)

(단위: Dh)

| 에미리트 | 인구(000) | 고정자본 형성 | 산업투자 | 對중앙정부 기부금 | 1인당 GDP (US\$) |
|----------------|---------|------------|--------|--------------|-------------------|
| Abu Dhabi | 1,127 | 28,806 | 3,344 | 12,489 | 26,158 |
| Dubai | 858 | 14,995 | 11,753 | 1,200 | 16,164 |
| Sharjah | 491 | 4,977 | 2,313 | - | 10,120 |
| Ajman | 161 | 1,210 | 618 | - | 6,140 |
| Ras al-Khaimah | 165 | 1,423 | 2,021 | - | 8,699 |
| Fujairah | 92 | 962 | 665 | - | 8,529 |
| Umm al-Qaiwain | 44 | 435 | 313 | - | 7,419 |
| Total | 2,938 | 52,808 | 21,027 | 13,689 | 17,649 |

자료: KIEP 내부자료.

한편, 라스알카이마·아즈만·푸자이라와 같은 북부 토후국은 아직까지 농업이 주된 산업이며, 이중 푸자이라는 최근 원유 정제 및 저장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항만을 통한 물류 증가로 경제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에미리트 역시 제한된 석유자원으로 인해 건설 및 제조업을 포함하는 비석유부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UAE의 양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각기 행정과 경제 수도로 일컬어지는데, 산업구조에 있어서는 역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아부다비의 경우 원유를 중심으로 한 광업 및 채석업이 전체 GDP의 40%에 이르고, 제조업이 11.9%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두바이는 자유무역지대의 활성화로 인해 제조업이 1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운송·통신 부문이 11.8%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잇고 있다(<표 2-5> 참조). 이는 아부다비가 석유 및 관련 산업에 특화하고 있다면, 두바이는 비석유산업 주도하에 유통, 금융, 관광 등 고도 서비스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표 2-5〉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부문별 GDP 구성(1999년 기준)

(단위: 백만 Dirham)

| 구 분 | 아부다비 | 두바이 |
|----------|-----------------|----------------|
| 농업 | 4,155 (3.8) | 451 (0.8) |
| 광업 및 채석업 | 42,909 (39.6) | 78 (0.2) |
| 제조업 | 12,890 (11.9) | 6,229 (12.2) |
| 수도·전기 | 2,075 (1.9) | 949 (1.9) |
| 건설 | 8,890 (8.2) | 4,481 (8.8) |
| 호텔·식당 | - | - |
| 운송·통신 | 4,995 (4.6) | 6,026 (11.8) |
| 금융·보험 | 4,796 (4.4) | 5,038 (9.9) |
| 부동산 | 8,010 (7.3) | 5,289 (9.6) |
| 정부 서비스 | 11,411 (10.5) | 5,344 (10.5) |
| 기타 서비스 | - | - |
| 합계 | 108,280 (100.0) | 50,941 (100.0) |

주 : 괄호안은 전체대비 비율(%).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Profile 2001.

다. 향후 경제 전망

2003년의 총예산은 2002년 10.3% 감축 이후, 원유 생산 회복과 가격 안

정에 힘입어 3% 가량 증액된 628억 디램(171 달러)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원유생산의 증가와 비원유소득의 강화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상쇄를 시키더라도 공공지출은 여전히 강세를 보여 2003년에는 GDP의 14.7%에 해당하는 372억 디램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2004년에는 원유가 약세전망에 따라 재정적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재정적자가 매우 높은 편이지만, UAE의 과거 10년간의 평균치에 가까운 것으로서 UAE에 있어 특수한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관행대로, UAE는 2,500억 달러에 달하는 방대한 해외자산 포트폴리오에 의해서 재정을 충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디램이 미국 달러화에 고정되어 있고,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자율은 달러금리와 근접한 상태로 유지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 경제의 약세가 전망되는 2003년 중에는 기록적으로 낮은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4년을 기점으로, 미국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UAE의 금리 역시 상승하게 될 것이다.

한편, OECD 선진국들의 경제회복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2003년 세계 평균성장률은 3.3%를 넘지 못하다가 2004년에는 3.9%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UAE의 2003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원유수요의 감소와 OPEC의 원유생산 감축으로 인해 2.8%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후반에 지역적 긴장이 완화된다면 2004년에는 국내외 투자 프로젝트가 회복세를 타고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되면서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3년의 달러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비석유제품과 제조업 상품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상승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나, 상승 압력은 달러의 회복과 함께 2004년에는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핵심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인상폭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 에미리트들의 광범위한 보조금제도에 의해 억제될 가능성이

높다. 외환제도는 디램을 미국달러에 연동시키는 현 제도를 향후 2004년 까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6) UAE의 주요 경제 전망 지표

| | 단위 | 2002 ¹⁾ | 2003 ²⁾ | 2004 ²⁾ |
|----------|--------|--------------------|--------------------|--------------------|
| 실질GDP증가율 | % | 1.0 | 2.8 | 4.0 |
| 석유생산 | 천 배럴 | 1,995 | 2,070 | 2,110 |
| 원유수출 | 백만 달러 | 15,072.5 | 15,493.9 | 12,316.2 |
| 소비자물가상승률 | % | 1.3 | 2.2 | 1.8 |
| 재정수지 | % | -14.0 | -14.7 | -17.3 |
| 수출 | 십억 달러 | 44.9 | 45.9 | 44.7 |
| 수입 | 십억 달러 | 30.8 | 32.2 | 34.6 |
| 경상수지 | 십억 달러 | 8.7 | 7.8 | 4.8 |
| 경상수지 | GDP대비% | 13.0 | 11.3 | 7.0 |
| 외채 | 십억 달러 | 20.1 | 21.3 | 23.1 |
| 평균환율 | Dh/\$ | 2.93 | 2.85 | 2.81 |

주: 1) EIU 추정치. 2) EIU 전망치.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December 2002.

경상수지는 미국과 이라크간의 갈등이 연장되는 상황하에서도 지속적으로 큰 폭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2004년까지는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에 힘입은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2002년 감소되었던 수출액은 산유량 증가와 함께 2003년에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비석유부문 수출은 중동지역의 불안한 정세로 인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AE는 미국 주도의 대이라크전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나, 다른 걸프만 국가에서와 같은 폭력사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적인 긴장이 정치적 측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는 있으나, 국

가 안보나 정치적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단계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내 갈등에 대한 우려가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 유입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는 있지만, 2003년 UAE 경제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수지 흑자는 계속되고, US 달러에 대한 환율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UAE는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움직임에 되도록 관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나,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경제적 보복을 당하지 않을 정도에서 적절히 입지를 조절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라크간 갈등관계 지속은 각 에미리트가 독자적 내지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계획을 지연시키게 될 것이다.

2. UAE의 최근 경제개발정책

가. 개관

UAE는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원유가 급등으로 인한 석유소득을 발판으로 1981년에는 1인당 GNP 25,000 달러를 기록하여 세계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 그러나 석유일변도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많은 경제사회개발 계획들이 협소한 국내시장과 숙련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난 후, 금융국가 및 관광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980년대 초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욕적인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입안하였으나, 급격한 유가하락 및 경기침체 등으로 시행이 보류된 이후 현재까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입안·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각 에미리트 정부차원에서 경제 부문별 독자적인 개발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경제개발 정책의 주요내용은 석유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비석유산업 부문을 육성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며, 전력 등 공공부문에서 민영화를 확대하고, 노동 및 기술을 국산화시키는 것이다.

아부다비는 막대한 석유수출로 인한 재정수입으로 연방재정의 약 80% 이상을 기여하고 있으며, 두바이가 10%, 그리고 나머지 에미리트들이 일부를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UAE는 종합적인 연방재정지출 계획을 수립할 적절한 체제가 없고, 단지 재정의 25% 내지 30%만이 연방차원의 지출로 이용될 뿐이며, 아부다비와 두바이 재정의 대부분은 자신의 에미리트 인프라개발에 지출되고 있다. 현재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특히 재정이 풍부한 아부다비의 영향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UAE의 주요 수입원천인 원유의 생산을 보면 생산가능량은 250만 b/d(하루생산량 배럴 단위)이고 실제생산량은 232만b/d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 아부다비가 막대한 석유자원(매장량 1,000억 배럴로 약 120년간 지속가능)과 가스자원(6조 meters³로 약 100년간 지속가능)을 갖고 있는데 반해, 두바이는 불과 20년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원유생산량은 1991년 42만b/d에서 1996년 27만b/d로 감소하였고, 현재는 15만~20만b/d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UAE는 상업 중심지인 두바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비석유산업화 전략을 추진하여 석유산업의 비중을 90년도 GDP의 50%에서 99년도 GDP의 25% 수준으로 낮추었다. 그 결과 아부다비를 제외한 다른 에미리트들 역시 석유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비석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석유산업의 비중은 국제유가의 변동에 동조하고 있는 관계로 유가가 다소 상승한 2001년과 2002년의 석유산업 비중은 2000년 수준인 30%대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되며, 더욱이 원유수출 증대에

따른 재정수입 증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설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 지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 아부다비의 경제개발정책

아부다비는 풍부한 석유 및 가스매장량을 바탕으로 석유 및 가스전 개발사업에 관심이 커서 비석유산업 육성에는 소극적이고, 이 때문에 비석유 인프라 프로젝트인 Lulu Island 개발 계획과 Saadiyat 자유무역지대 프로젝트 등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풍부한 재정과 연간 4,000억 달러 규모를 거래할 수 있는 걸프연안, 이란, 러시아 및 CIS, 인도, 파키스탄 등의 배후 시장에 힘입어 앞으로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부다비의 Saadiyat 자유무역지대 프로젝트는 국제증권거래소, 금융결제중개소, 1차 상품³⁾ 시장, 1차 상품 선물거래소 등의 설립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첫 단계인 인프라건설을 진행 중이다. 더욱이 금융시장으로서 아부다비는 홍콩과 싱가포르 금융시장이 폐장한 후 런던시장이 개장하기까지의 3~5시간의 시간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전략적인 이점을 갖고 있으며, 여타시장이 휴장하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개장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어 그 가치를 주목받고 있다.

다. 두바이의 경제개발정책

UAE GDP의 약 25%(200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두바이 정부는 1996년에 2011년까지 석유의존 경제구조로부터 완전탈피를 주요 목표로 하는 장기 경제개발계획(Dubai Strategic Development Plan 1996-2000 into

3) 원유와 농산품을 포함한 67개 품목.

the 21st Century)을 발표하였다. 또한 민간분야의 투자여건을 개선,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각종 경제통계를 체계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두바이는 가까운 장래에 석유자원이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정수입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 화물집산 및 중개지(entrepot) 건설, 중동의 상업허브(commercial hub)화 전략, 관광리조트의 기능을 보다 개선한 지역비즈니스 허브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두바이 정부는 1999년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Dubai Internet City (DIC)' 프로젝트를 발표,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대 인근 4km내에 인터넷망을 설치하여 정보통신 허브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두바이 정부는 인터넷 시티 개장에 이어 인터넷 시티 인근에 인터넷 미디어 시티를 건설하여 두바이를 국제 문화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세계의 첨단 미디어 산업·위성통신·인터넷 방송·전자 출판·연예 오락 등의 전문 미디어 업체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두바이 정부는 2001년 1월부터 8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중인 인터넷 시티 인근에 200헥타르의 부지를 조성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미디어 시티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입주업체에게는 인터넷 시티에서 부여하고 있는 외국인지분 100% 허용과 토지 50년간 무상임대 및 각종 세금 면제 등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출판·방송·언론에 대한 UAE 정부의 검열을 면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였다.⁴⁾ 미디어 시티에는 이미 66개사가 입주, 2001년 말까지 국내외로부터 총 125개사가 입주하였는데 미들 이스트 브로드캐스터사와 영국 로이터 통신사가 중동지역의 거점을 미디어 시티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는 등 매스컴, 광고 대리점 등에 있어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두바이는 미디어 시티 조성

4) 인터넷 미디어 시티 이외 지역에서는 언론 및 출판에 대한 자율검열을 지속하고 있음.

을 통해 중동 역내 최대 물류·상업 및 정보화 중심도시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중동, 아프리카, 유럽 및 CIS 제국을 연결하는 종합 미디어 산업과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갖춘 핵심 중추 지역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3. 최근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

2000년 UAE의 외국인직접투자는 두바이의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호조를 나타냈다. 분야별로는 지금까지 석유개발분야(아부다비), 상업 및 서비스 분야(두바이)에 대한 투자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새롭게 개설된 자유무역지대를 통하여 IT·미디어 분야로의 투자도 진행되고 있다.

〈표 2-7〉 UAE의 ODI, 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
| 해외직접투자(ODI) | 1 | -11 | -11 | -33 | -27 | 61 |
| 외국인직접투자(FDI) | 399 | 301 | 232 | 253 | -13 | 100 |

자료: UNCTAD(2002), World Investment Report 2001.

UNCTAD에 의하면 UAE의 2000년 외국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 순투자, Flow 기준)은 1억 달러로 전년 실적 마이너스 1,300만 달러에서 큰 폭의 증가를 시현하였다. 이는 두바이 정부가 산업다각화의 대표 작품으로 개설한 JAFZ의 상업 및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총면적 100km²에 이르는 JAFZ는 개설이래 눈부신 발

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비된 인프라와 우대조치 및 원스톱 샵(One-Stop-Shop: 진출기업에 대한 편리성을 배려한 수속창구의 일체화·신속화)이 성공하여, 2001년 9월말 시점의 총 진출기업은 1,864개 사로 중동 최대의 기업집적지지로 발전하고 있다. 1999년 후반부터 고유가가 유지되는 호황기를 맞아 외국인 기업의 진출 붐이 계속되고 있으며, JAFZ 진출기업에 의한 누적투자금액은 2001년에 200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JAFZ의 특징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째로 선진국 외에 인도, 이란 등 진출기업의 국적이 100개국을 상회할 정도로 다양하다는 점, 둘째로 제조업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적고, 대부분이 판매·물류거점 설치를 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 셋째로 중동 이외에 아프리카, 서아시아, 러시아·중앙 아시아를 포함한 지역으로의 매우 광범위한 재수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JAFZ를 통한 두바이 에미리트의 산업다각화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 다른 6개의 에미리트도 비슷한 자유무역지대를 개설하고 있다. JAFZ는 두바이 시내 중심으로부터 40km 떨어져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다른 에미리트의 자유무역지대는 사용료가 저렴하고, CIS나 중국과의 정기편을 취항시키는 등 JAFZ를 상회하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두바이로부터 가까운 샤르자 및 아즈만 에미리트의 자유무역지대로의 진출 건수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술한 UNCTAD 통계에 의하면 1995년이래 자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해외직접투자액을 크게 앞섰지만, 해외직접투자액 역시 2000년에 6,100만 달러로 5년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신설투자 프로젝트 사례로는 수단내 폐수·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조인트 벤처 등이 있다.

제3장 UAE의 외국인투자 환경

1. 외국인투자 관련법

UAE는 외국인투자법을 따로 마련해놓고 있지는 않으나, UAE의 연방통상입법체계에 있어서 가장 최근의 기본 원칙인 연방상규(commercial code)를 1993년에 공포하였다. 동 법률에 따르면 모든 에미리트에서의 상업활동 규제를 위해 에미리트 자치 당국은 상업활동의 장소를 적절히 허가해야 하나, 영업 활동 근거지가 UAE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UAE에 수출하는 외국 회사들은 정기적이거나 지속적인 사업체가 UAE 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허가의 종류로는 무역허가, 산업허가, 서비스허가, 전문허가, 및 건설허가 등이 있다. 몇몇 연방 규제는 자유무역지대 밖의 UAE 국내에서의 상업행위를 관리하며, 자유지대 안에서의 행위는 특별 조례에 의해 관리되는데 이는 제4장 자유무역지대에서 후술할 것이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주요법규로는 연방 회사법, 에이전시법(commercial agencies law), 연방 산업법, 정부 입찰법의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연방회사법은 UAE내에 설립된 모든 회사 및 UAE에서 활동중인 외국기업의 지사에 적용된다. 회사법에 의거 설립된 회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동 회사는 1개 이상의 UAE 국적의 파트너가 있어야 하며 동 파트너의 지분이 회사 자본금의 5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UAE 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비국적자는 UAE 국적을 소유한 1개 이상의 파트너 없이는 UAE에서 상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회사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한조건에 의해서도 비국적자의 상업활동이 금지되고 있다.

각 회사는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립하되 회사법 제6조에 따르면 일반적 파트너쉽, 제한적 파트너쉽, 합작법인, 공적 합작상장기업, 사설 합작상장기업, 유한책임회사, 주주제한 파트너쉽의 7가지 형태 중 하나를 따르지 않으면 회사설립이 무효로 간주된다. 또한 회사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한 개인의 경우도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법에서 허가된 형태의 회사설립 이외의 회사설립이 실제에 있어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각 당사자들이 회사법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한 회사법 하에서의 7가지 기업 형태 중에서, 현재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가 현지회사와 외국업체 간의 가장 적합한 합작형태로 간주되고 있다.

에이전시법은 외국 본사로 하여금 전문적인 상업 대리인을 통해서만 UAE내로 물건을 공급, 유통하도록 요구한다. 외국인 당사자는 전 UAE 혹은 특정 토후국 혹은 몇몇 토후국 그룹에서의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법은 대리인의 권한이 중개협정의 기간만료와 상관없이 외국인 당사자와 지역 대리인간의 상호협정에 의해서만 종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산업법은 산업 프로젝트에 있어 51%의 UAE 지분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은 또한 프로젝트가 UAE인에 의해 경영되거나 다수의 UAE인이 포함된 관리 위원회를 둘 것을 요구한다. 단, 석유, 천연가스, 기타 원료의 추출이나 정제에 관련된 프로젝트의 경우 법의 적용이 면제된다. 아울러 소자본투자 프로젝트나 특별법이나 협정에 의한 특별 프로젝트도 산업법의 적용이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정부 입찰법에 의하면 공급자, 계약자 또는 입찰자는 연방정부 프로젝트에 있어서 UAE 국적자이거나, 최소 지분의 51%이상이 UAE국적 소유인 회사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연

방정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합작투자에 참가하거나 UAE 국적 기업과의 중개 협약이 있어야 한다. 한편 연방입찰자들은 입찰가의 5%가 무조건적으로 은행보증이 되는 입찰채권을 구비해야 한다.

2. 투자절차

UAE는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형태에 따라 투자절차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UAE에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가장 선호되는 방법은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므로, 여기서는 이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회사법 제218조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란 파트너의 수가 최소 2명에서 최대 50인인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각각의 파트너들은 출자 주식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법적으로는 외국인 파트너가 총 자본금의 최대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회사 경영은 외국인 경영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회사명 승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밟아야 할 첫 번째 단계는 회사이름과 영업활동에 대한 경제개발과의 승인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개발과가 정한 형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이름 맨 뒤에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회사이름은 파트너 이름이나 설립목적 등으로부터 인용할 수 있다. 회사명과 영업활동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협약각서

를 구비해야 한다.

나. 협약각서의 준비, 승인

협약각서(memorandum of association: 설립계약서)는 각서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회사법 제224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주목할 점은 경제개발과가 승인한 회사이름과 각서에 명기된 회사이름이 동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협약각서 작성이 끝나면, 상무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협약각서가 회사법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공증인은 이를 공증하지 아니한다. 파트너들 중 한 사람이 법인격을 가진 회사인 경우 인증을 받기 전에 관련 부가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일단 각서가 인증되면 회사대표는 소정의 서류를 경제개발과에 제출하여 법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난 후, 동각서는 당해 에미리트의 회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경제정책 및 자주 변경되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심사를 받게 된다.

다. 회사 등록

협약각서의 승인을 얻게 되면 회사등록을 위해 경제개발과의 무역업허가 및 법인 등록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다. (법인등록은 매년 갱신할 수 있다) 등기소에서 회사설립을 위한 구비서류가 완비되었다고 판단하면 회사이름이 등기소에 등재되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밀봉되어 회사이름이 등재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사의 법적 대리인에게 보내진다. 대리인은 동일한 서류들을 연방 상무성에 송부해야 한다.

- 공증을 받은 설립계약서

- 회사 등록번호와 등록일이 기재된 회사 경영자가 발행한 증명서
- 은행이 발급한 증명서 및 회계감사인의 증명서
- 등기소에 회사명 등재를 위한 신청서
- 등기소에 회사명을 등록했음을 나타내는 발췌서류. 이는 영업허가서를 얻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서류임

라. 관보에 회사명을 게시

회사의 법적 대리인 앞으로 발송된 서류는 경제개발과에 전달되어 관보 게시판에 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된다. 회사에 대한 내용은 게시 수수료(현재 3,000 Dh)를 지불하는 즉시 게시된다. 관보에 공시한 후, 경제개발과는 회사설립 승인서를 발급한다.

마. 영업허가서 취득

새로 설립된 회사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경제개발과에 영업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영업허가 신청은 정형화된 신청서에 아랍어로 기재한 후 회사의 적격 서명권자가 서명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아랍어와 영어로 회사명을 기재한 영업허가 신청서
- 사무실 임대 증명서
- 영업소의 적합성에 관한 건설과의 증명을 얻기 위한 신청서

영업소에 대한 건설부의 안전증명을 취득한 후, 영어와 아랍어로 된 회사 명패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 영업소는 소방서 및 안전청과 경

제개발과 산하 면허국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검열이 끝난 후, 지적사항에 비례하여 영업허가 수수료가 책정된다. 수수료는 회사의 부동산 임차계약액의 10%와 경영자의 임차계약액의 5%로 구성된다. 경제개발과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대략 1,000 디램에 이른다. 수수료를 지불하고 회사경영자의 여권용 사진 3장을 제출하면 영업허가증이 발급된다.

바. 두바이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가입

경제개발과로부터 영업허가를 취득한 이후, 유한책임회사는 두바이 상공회의소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3. 세제 및 외환관리제도

UAE는 각 에미리트별로 1960년대에 제정한 규정이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석유관련 기업과 금융기업에 대한 법인세만을 부과하고 있다. 석유관련기업에 대한 세금은 두바이의 경우 순이익의 55%를, 기타 지역의 경우는 순이익의 50%를 부과하고 있으며, 은행과 같은 금융기업에 대해서는 순이익의 20%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개인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및 사회보장제 등의 기타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UAE는 외환에 관해서도 매우 자유로워 이스라엘 화폐가 UAE내로 유입되거나 거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UAE로 유입 또는 유출되는 자금의 송금에 관한 규제는 없으며 자본거래에 있어서도 등록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공항 출입시에도 외환의 신고가 필요치 않으며, 통화의 사용에 제한이 없고 거주자 계정과 비거주자 계정간의 구분이 없다. 다른 모든 화폐

는 시장결정 환율에 따라서 자유롭게 거래되어지며, 환전시에도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980년이래 UAE의 통화인 디램은 달러에 페그되어 있으며, 1 달러는 3.67 디램에 거래된다.

4. 분쟁 해결

UAE는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회원국으로서 각 에미리트가 독자적인 법률체도를 유지하는 것을 승인하는 연방법정체도를 채택하고 있다. 연방법정체도는 제1심 연방법정, 연방법정상고, 최고연방법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1심 법정은 다시 민사, 형사와 샤리아(sharia: 이슬람聖法)법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샤리아와 민사 법률체도는 대부분의 경우 같은 비중을 갖지만, 외국 당사자가 연루된 상업관련 분쟁은 민사법정에서 심의되는 경향이 있다. 보통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이 주요 상업관련 분쟁을 심리하며,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포함된 모든 소송은 샤리아 법정이 아닌 민사법정에서 열리게 되어있다.

중재는 쌍방합의에 근거한 연방법원의 신청, 중재자들의 지명에 의한 각각의 중재 합의서, 또는 추천자가 지정한 관계당국에 의해서 법정절차 없이 이루어진다. 분쟁의 중재, 조정, 우호적인 합의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민사절차의 법 조항은 1992년 자예드(Zayed) 대통령 때 신설되었다. 당 조항은 중재자의 자격조건과 중재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우선 중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UAE내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재정결과는 해외판례와 같이 간주된다. 또한 재정결과의 신속한 시행을 보장하는 규정과 함께 특정 클레임에 대한 신속한 처리 절차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재판 절차에 앞서 행해질 수 있는 재산압류, 피고의 여권 압수, 여행 금지, 피고의 구속 조치 등 판정의 발효까지 행해질 수 있는 다양한 종류

의 예방 및 잠정 구제 조치 일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한 것은 분쟁 해결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1993년 아부다비 상공회의소(Abu Dhabi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이러한 기업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부다비 상업쟁의 중재센터(Abu Dhabi Commerce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enter)를 설치하였다. 상공회의소장은 중재센터의 장을 겸임하고 상공회의소의 중재 위원회 회장은 총서기직을 수행한다. 중재센터는 상업분쟁에 대한 조정과 중재를 관할하고, 분쟁 양 당사자에 의한 위임자는 중재센터의 결정사항에 대한 최종승인을 위임받는데, 각 당사자들은 아랍어 또는 다른 언어를 선택하여 중재센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5. 고용 및 임금제도

가. 근로조건

1) 고용 계약

UAE의 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연방법 제8조에 주로 포함되어 있는데, 동 법에 따르면 고용 계약은 특정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이다. 고정된 기간의 계약일 경우, 고용 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하나,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 추후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노동법 제38조) 한편, 무제한 기간의 계약은 시작일은 있으나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고용 계약이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고용계약의 필수 조건은 임금, 서명일, 직무 개시일, 계약의 종류, 취업지 및 고용기간이다.

고용계약의 종료는 노동법 제113조에 의거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피고용인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계약이 한시적 계약이고 (계약이 암묵

적이거나 명목적으로 연장되지 않고) 그 특정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또는 정규직 계약으로 노사 양측 중 한 쪽이 계약의 종료를 표명하고, 적절한 통보 기간이 제공된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나 때로는 노동법 제120조에 의거, 고용주는 사전 통보 없이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으며, 피고용인 역시 특정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사직할 수 있다. 정규직 고용계약의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노동법 상에는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통보 규정이 고용기간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다. 노동법 제118조에 의거, 고용계약은 사직 통보 기간 중에는 지속적으로 유효하며 그 기간 중 피고용인은 계속해서 근무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 합의된 급여를 지급 받는다. 노사 양측이 통보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용주 또는 피고용인이 고용계약의 종료 이전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 불이행 측에서는 통보를 대신하는 별도의 보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는 불고지가 다른 당사자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통보에 대신하는 보상금은 피고용인의 통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되는 최종 수령 급여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2) 근무시간

노동법은 1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15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청소년에 대한 특별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동규정은 성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계약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성인 근로자에게 노동법이 허용하는 최대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8시간이다. 그러나, 호텔업, 감시요원, 식당 종사자는 하루에 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2시간 줄어든다. 피고용인은 최소 1시간 이상 지속

되는 휴식시간 없이 5시간 연속 일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초과근무는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유급이어야 하고, 평상의 근로시간에 주어지는 임금에 근로자의 정상임금의 최소 25%를 합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수당을 받아야 한다. 초과근무는 실질적 손실을 예방한다거나, 심각한 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휴가

노동법에 의거하여 피고용인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휴가가 주어지는데, 기본적으로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부여된 휴가를 허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법 제74조에 따라 피고용인이 노동법에 명기되어 있는 공휴일이나 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피고용인은 전체 또는 일부의 급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본급의 50% 지급과 함께 동일한 일수의 휴가를 허가해야 한다. 만약 피고용인이 해당 일수의 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은 해당 일을 대신하여 피고용인에게 기본급의 150%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피고용인은 고용 기간 중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고용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고용 기간 중 매달 최소 이틀을,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30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피고용인은 연가기간 중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용인의 근무가 종료되거나 적절한 사직 통보 후 피고용인이 사직할 경우에는 피고용인이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때 급여는 근무의 종료시점에서 해당 년도의 근속일수로 나눈 것에 상당하는 연가의 해당액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밖에 피고용인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피고용인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 2일 이내에 고용인에게 보고해야 하며 고용인은 이에 대해 피고용인의 질병의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용인이 3개월 이상(견습기간 제외) 근속한 직장에서는 90일 이내에서 연속 또

는 비연속적으로 병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때 급여는 최초 15일간은 완전 유급을, 이후 30일간은 급여 중 반액을,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최소 1년 이상 근속한 여성 피고용인은 45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으며, 휴가는 출산을 전후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근속기간이 짧은 여성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급여의 1/2과 함께 45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나. 급여제도

노동법은 기본급과 총급여를 구분하여, 기본급은 고용계약에 특정화된 임금으로 어떠한 혜택이나 수당도 배제한 피고용인의 임금을 대표하는 반면, 총급여는 피고용인에 지급된 모든 수당과 기본급을 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양자를 구별하는 법적인 중요성은 퇴직금과 상여금이 총급여가 아닌 기본급에 따라 계산된다는 것이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의 미지급은 피고용인이 고용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법적으로 아직 최저임금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퇴직금은 피고용인이 수령한 최종 기본급에 의거하여 계산되며 고용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일에 지급된다. 최소 1년 이상 근속한 피고용인이 고용 기간을 만료하였을 경우, 최초 5년간의 근무 기간에는 매년 21일간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5년 이후에는 퇴직금이 총 2년분의 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매년 30일간의 기본급을 지불한다.

다. 산업재해

노동법은 근무시간 중 피고용인이 입은 상해에 관한 고용주의 의무 사항과 직장 내 직업병 또는 사고로 고통받는 피고용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주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직장 내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피고용인과 관련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노동부와 경찰에 직접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노동부에 보고할 것이다. 고용주는 경우에 따라서 피고용인의 상해 치료비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4장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자유무역지대

1. 주요 자유무역지대 현황

최근 UAE는 향후 3~4년 동안 약 33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여 수도 아부다비시 인접 사디야트도를 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는 등 자유무역지대 확대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요충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물류 및 금융 거점으로 중점 육성하려는 장기 국가발전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세원을 다양화하고 석유중심의 산업구조를 점차 다원화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UAE에서는 자유무역지대 안에서만 100% 외국인 투자 및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2002년말 현재 외국인투자의 95% 이상이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85년 2월 두바이가 최초로 100km²에 이르는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한 이래 UAE는 두바이 공항 자유무역지대, 샤자르 공항 자유무역지대, 함리야흐 자유무역지대, 후자이라 및 아즈만 자유무역지대의 6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여 현재 운영중이다.

사디야트 자유무역지대 조성 개발사업은 우선적으로 제조업을 육성하여 석유중심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나아가 유럽과 아시아·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발사업 초창기에는 상품거래와 물류·창고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걸프제국으로 유입되는 석유수입 등 유동성 자산이 막대한 점을 감안하여 국제증권거래·어음교환 등을 취급하는 금융시장으로 개발하는데 주력하는 등 사업분야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까지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1996년에 아부다비 자유무역지대 관리청(Abu Dhabi Free Zone Authority)을 설립하여 기업등록 및 라이선스 발행 업무를 전담토록 한 데 이어, 1999년 7월에는 Emirates Global Capital Corporation(EGCC사)⁵⁾을 설립하여 향후 사디야트 개발 프로젝트 추진은 물론 거래소 개설 이후 50년간 운영전반에 관한 이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0년 5월부터 금융기관·보험회사 등 수 개사에 영업 라이선스를 발행하는 등 정식업무를 개시하였고, 2001년 1월부터 아부다비시와 사디야트도 연결 교량과 증권거래소 건물 등 각종 인프라 시설을 단기에 완공한다는 목표 하에 관련 토목공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업체에 대해 100% 외자기업 설립 허용,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투자수속 창구 단일화, 과실송금 자유화 등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일주일 7일 내내 24시간 영업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싱가포르 시장 폐장 후 런던시장 개장 전까지 3-5시간의 틈새 금융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한편 웹사이트에 사디야트 시장을 소개하고 런던과 뉴욕, 동경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UAE의 자유무역지대 확대 추진은 유럽과 아시아·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통요충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특히 수도권 주변에 자유무역지대를 집중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물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함은 물론 금융 및 재정 중심지로서의 기능 확대를 도모하고 세원의 다양화와 함께 국제유가 변동에 크게 영향받는 석유일변도 산업구조의 문제점도 시정해나가려는 장기적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UAE 정부는 현재 UAE 연방 내 다수의 자유무역지대가 운영 중에 있거나 개발 추진 중에 있다는 점에서 토후국의 경쟁적인 자유무역지대 개발확대에 따른 부작용 등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

5) EGCC는 아부다비 토후국과 자이드 대통령 개인의 투자기금, 국제 석유투자회사 등 다섯 단체가 9억 달러를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면서 각 자유무역지대 특성을 살려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러나 개발 자금 확보의 관건인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또 외국기업의 성공적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UAE의 두바이는 세계 최초의 자유무역, 정보산업 단지인 인터넷 시티를 2000년 10월 28일 개장한 데 이어, 2001년부터 인터넷 미디어 시티를 건설하여 첨단 미디어 기업과 위성통신·인터넷 방송사 등을 적극 유치,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미디어 산업의 적극 유치는 UAE의 경제 활성화 및 정보 인프라 조기 구축에 기여하는 등 두바이의 역내 경제적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나, 중동 정세 불안요인 등이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두바이 인터넷 시티는 모하메드 두바이 왕세자의 지시로 1999년 10월에 420헥타르의 부지에 2억불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 시설공사를 마치고 해외 정보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같은 해 10월 28일 개장하였다. 인터넷 시티는 일반 행정조직과는 달리 두바이 국왕 직할의 독자적 행정조직을 갖춘 세계 최초의 자유무역 정보산업 도시로 육성되고 있다. 인터넷 시티의 입주 현황을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 오라클, 아이비엠, 휴렛 팩커드 등 세계 우수 종합 정보통신사들과 관련기업 및 금융기관 등 190여 개의 업체가 이미 입주,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이외에도 350여 개 업체들이 입주 등록을 마친 데 이어 영업활동 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바이 정부는 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의 지분 보유한도를 종래 49%이하로 억제해 왔으나, 최근 동 규정을 철폐,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입주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50년간 토지임대 및 소득세·법인세 등 영업관련 세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표 4-1〉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대내 행정비용 및 이용료 현황

| 구 분 | 달러(US\$) 현지화(Dh) | |
|---|------------------|--------|
| <인허가 과정에 따르는 비용> | | |
| 모든 종류의 면허 취득 | 954 | 3,500 |
| 면허 갱신(경제활동에 관한) | 954 | 3,500 |
| 면허 갱신(경제활동 이외의) | 136 | 500 |
| FZE(Free Zone Establishment) ¹⁾ 등록 | 2,725 | 10,000 |
| 전대비용 | 2,725 | 10,000 |
| 건축허가서 발행 | 0.82 | 3 |
| <통신 설치비> | | |
| 전화 | 68 | 250 |
| 전신 | 245 | 900 |
| 팩스 | 41 | 150 |
| 통신사 서비스료 | 27 | 100 |
| 우체국의 사서함 제공비 | 57 | 210 |
| <두바이 상공회의소 등록비> | | |
| 등록 및 회원자격 갱신: | | |
| 무역, 산업 및 서비스 면허 | 817 | 3,000 |
| 국가산업 면허증 | 545 | 2,000 |
| 파트너가 외국기업일 경우 필요한 국가산업 면허증 | 817 | 3,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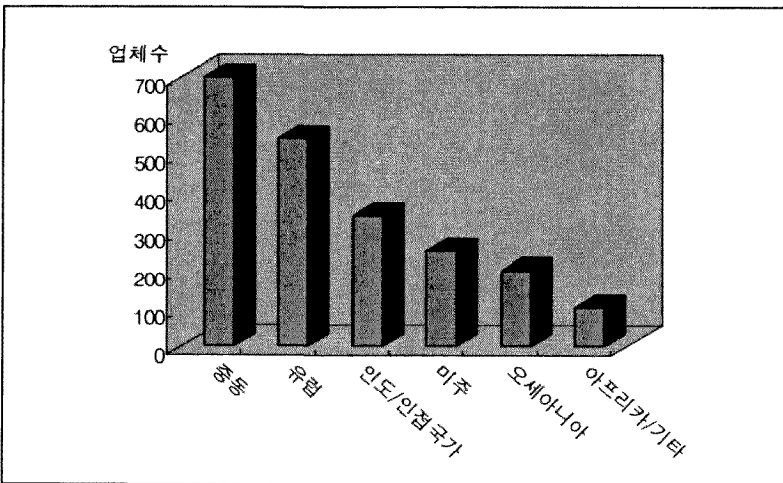
주: 1) JAFZ에서는 FZE라는 법인격만이 인정됨.

자료: Essam Al Tamimi(2000), Setting Up in Dubai.

두바이의 인터넷 미디어 시티 개설은 1985년의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대, 1999년의 두바이 국제공항 자유무역지대 구성에 이어 석유자원 부족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로) UAE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역내 정보 인프라 조기 구축을 선도해 나가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두바이는 인터넷 미디어 시티 개설에 이어 인터넷 유니버시티 등 관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10년 내 역내 첨단 기술·경제 및 문화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구상이나 중동 지역의 정치 불안, 역내 국가들의 빈약한 정보 인프라, 기후 및 토양의 척박성 등 주변환경 극복문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1〉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대의 지역별 진출 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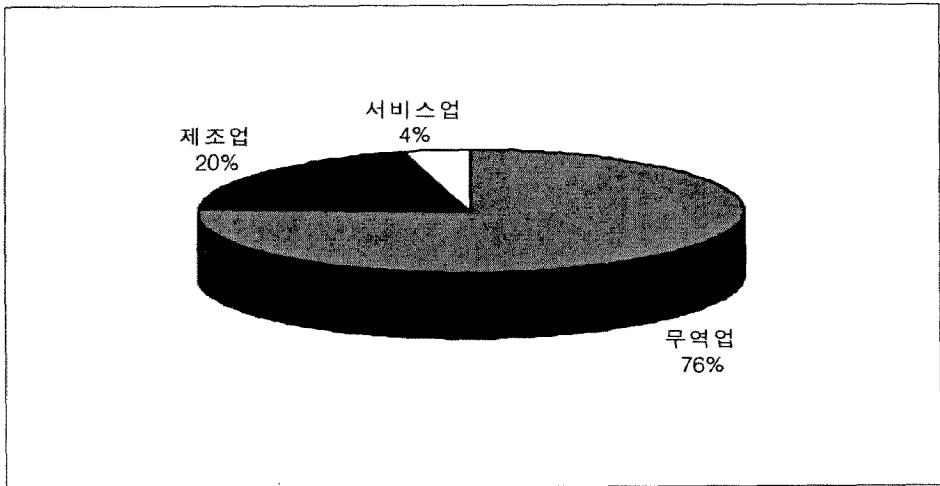
자료: Jebel Ali Free Zone Authority, The Official Jebel Ali Free Zone Directory 2002.

다른 지역에 비해 완화된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와 자유로운 사업 지향적 정책으로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대는 세계적인 자유무역지대로 성장하고 있다.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Jebel Ali Free Zone에는 총 100여개 국에

6) 두바이는 UAE내 아부다비와 같은 여타 토후국과는 달리 석유 등 천연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상업·물류 중심지로 성장한다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서 2,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지역별로는 업체수 기준으로 중동지역 국가들이 700개로 가장 많으며, 유럽이 약 550개사로 뒤를 따르고 있다. 주요업체들로는 Unilever, Honda, Nissan, Mitsubishi, JVC, Toshiba, Sanyo, Yamaha, Sony, Philips, Nokia, Daimler Chrysler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업종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역업이 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20%, 서비스업이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물류들은 자유무역지구 내의 관할청과 지역 협력체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림 4-2>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대의 업종별 비중



자료: Jebel Ali Free Zone Authority, The Official Jebel Ali Free Zone Directory 2002.

2. 자유무역지대의 회사설립 규정

자유무역지대에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투자자들은 2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유무역지대에 아예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거나, UAE 국내나 해외에 소재하는 모회사의 지점 또는 사무소 형태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신설기업이 적법한 법인격을 얻게 된 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지대 당국이 발행하는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자유무역지대에서의 토지 매입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국으로부터 임차하게 될 부동산의 종류와 종업원의 고용방식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자유무역지대에서 취득 가능한 허가의 종류는 영업허가, 제조허가, 용역허가, 현지제조 허가 등 모두 네 가지인데, 신설회사가 취득해야 할 허가의 종류는 그 회사가 어떠한 종류의 영업활동을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영업허가는 품목의 수출입, 판매, 유통, 저장 등의 영업활동을 원하는 회사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회사 설립 장소가 자유무역지대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회사가 UAE 국내에서 제품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UAE 국내 에이전트나 유통업자를 통하여 판매해야 한다. 이러한 영업허가를 받아 자유무역지대에서 영업을 수행하는 회사는 경제개발과로부터 따로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둘째, 제조허가는 신설법인이 원재료의 수입, 제품의 생산, 완제품의 수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 앞서와 같이 회사가 UAE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기를 원한다면 현지 에이전트나 유통업자를 통하여 판매하여야만 한다. UAE 국내나 해외에서 설립된 회사들도 제조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셋째, 용역허가는 자유무역지대 내에서의 회사의 영업활동이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는 경우 받아야 되는 허가이다. 영업활동으로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제공되는 용역이 UAE 또는 해외 소재 모기업의 영업허가서에서 정한 서비스의 종류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지 제조허가는 UAE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 설립된 제조회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본 허가 소유

자는 원료를 수입하여 특정제품을 제조할 수 있고, 완제품을 세계 어느 곳에나 수출할 수 있다. 동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걸프협력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GCC) 회원국의 국적 소유자가 51% 이상의 회사 지분을

〈표 4-2〉 특별인가가 요구되는 업종

| 업종 | 담당부서 |
|---|--------------|
| 약국 | 보건부 |
| 카세트/비디오가게, 서점, 출판사/인쇄사, 신문, 잡지, 광고/번역회사, 방송대행사, 서예/그림가게, 사진스튜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수입업자, 위성수신 장비/TV 디코더 | 정보부 |
| 폭발물 및 무기 관련업 | 국방부 |
| 투자회사, 투자자문회사 및 은행 | 중앙은행 |
| 개인병원 | 보건 및 의료서비스과 |
| 계약회사, 공학 컨설턴트, 기술 서비스 관련 연구소 | 두바이 당국 기술위원회 |
| 여행사/항공화물 사무소, 해상승객/화물운반 선박, 차량운송사 | 민간항공과 |
| 변호사/법률 자문관, 주유소 | 법무부 |
| 유아원, 사립학교, 학원 | 교육부 |
| 신규 사업 프로젝트개시 확장 | 재정산업부 |
| 공인회계사 및 회계감사관 | 경제통상부 |

자료: Essam Al Tamimi(2000), Setting Up in Dubai.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된 제품의 부가가치가 최소한 40% 이상 되어야 한다. 신설회사의 영업활동은 재정산업부가 발행한 생산 제조 증명서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활동에만 한정된다. 회사가 현지제조허가를 취득하면 UAE 국내에서는 현지기업으로 간주되며 GCC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위에서 설명한 조건들이 충족되고 UAE 국적 소유자가 25% 이상의 회사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된 제품은 UAE 원산지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자유무역지대에서의 영업허가 신청은 당해 에미리트 관할청이 담당하며 허가서는 통상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된다.

제5장 맺음말

UAE는 인구 270만명의 인구소국으로 내수시장 자체는 매우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수도라고 할 수 있는 두바이가 인근시장에 대한 재수출기지의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어, 세계 최고 중계무역 중심지의 하나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UAE의 수입액 중 40% 이상은 재수출되며 재수출 비율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 2000년에는 상품 수입액 중 재수출이 43% 가량을 차지하였다. 주요 재수출시장은 인근 GCC국가, 북아프리카 및 러시아 등이지만 한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장의 하나로 UAE는 1993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아중동 지역 내에서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여 2002년말 현재까지 변함없이 그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100% 외국인 출자가 가능하고 자본과 이윤의 본국송환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현대적인 교통, 통신시설 및 각종 세제 면제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자유무역지대예의 투자는 매우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UAE는 최근 정보통신관련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두바이 인터넷 시티와 미디어 시티를 유치하여 해외 우수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은 정보통신산업 등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IT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IT분야 발전 중심 전략을 고려하여 사업성 있고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 참여와 함께 컴퓨터, 통신망 설비, 핸드폰, 보안 시스템 등 전자제품의 수출 교두보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UAE는 걸프연안, 인도, 파키스탄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우회수출 기지로서 활용가치가 높다는 점을 생각하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상황의 변화에 맞게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여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우리 기업들간의 무리한 내부 경쟁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자금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한 공동 컨소시엄 구성이나 분야별 협의 조정기관을 통한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차원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추가적인 진출여건 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UAE는 중동의 허브국가를 표방하며 중계무역의 활성화를 주요 경제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다. 지역의 거점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물류 시스템, 풍부한 투자여건과 발달된 금융시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중동 국가들 중 가장 으뜸은 단연 UAE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한창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북아 중심국가화 전략도 UAE의 허브전략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 중심국가화 전략이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한국이 지리적·경제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중국, 일본보다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외국기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비즈니스 중심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점화 전략은 공식적인 경제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에서도 점차 한·중·일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국토와 노동력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의 경제적 기회까지도 이용하여 세계적 기업, 자본, 기술 및 전문인력을 흡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의 선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 국제공항이나 송도 신도시 주변의 배후 부지 개발을 기초로 물류 인프라 확충,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UAE의 자유무역지대 사례를 참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 <http://www.kotra.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2. 『중동아프리카시장 이렇게 공략하라』.
외교통상부. 2002. 『GCC 국가 개황』.
외교통상부. 2002. 『외국의 통상환경』.
한국수출입은행. 2001. 『아랍에미리트』.

〈외국문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2002. *Middle East Monitor*. (December).
DRI · WEFA. 2002. *The World Overview*. (June).
EIU. 2001. *UAE Country Profile*.
Essam Al Tamimi. 2000. *Setting up in Dubai*.
IMF. 2002.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Jebel Ali Free Zone Authority. 2002. *The Official Jebel Ali Free Zone Directory*.
Jebel Ali Free Zone Authority. 2002. *Investor's Guide*.
National U.S.-Arab Chamber of Commerce. 2001. *Country Economic Information*.
UAE Official Gazette. 2002. Federal Law No. (8) of 1984 on Trading Companies.
UAE Official Gazette. 2002. Federal Law No. (37) of 1992 on Trade Marks.
UAE Official Gazette. 2002. Federal Law No. (7) of 2002 on Copyrights and
Related Rights.
UNCTAD. 2001. *World Investment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FY 2001. *Country Commercial Guide*.

Executive Summary

UAE's Policy for Inducing Foreign Investment

Hee-Yeon Bae

The United Arab Emirates(UAE) is a federation of seven emirates located on the Persian Gulf and the Gulf of Oman. The UAE holds about 10% of the world's proven oil reserves and needless to say, oil is the mainstay of the economy. Alike most of other states in the middle east, heavy dependence on oil led to high fluctuation of economy from volatility in oil prices and oil export volumes. To safeguard the economy from these uncertainties, the federal government spent more than US\$6.8 billion to develop manufacturing industry during the last 30 years. And as a result, more than 1,000 manufacturing factories were built from total investment of around US\$20billion. While oil related industries are concentrated in Abu Dhabi, non-oil industries are aggregated in Dubai, which has achieved high rate of growth leading economic diversification of UAE.

If Abu Dhabi is the capital of UAE, Dubai can be called as the economic capital of UAE. And as a matter of fact, both have significantly different industrial structures. In Abu Dhabi, mining and quarrying sector accounts for 40% of the GDP and manufacturing sector accounts for 12% taking the second place. Whereas in Dubai, manufacturing sector ranks the first place with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sector following closely behind thanks to its flourishing free zones. This clearly shows that while Abu Dhabi is

specialized in oil and gas related industry, Dubai is proceeding with its strategic development plan focused on fostering distribution, finance and tourism industry.

In case of Dubai, ever since Dubai government, which accounts for 25% of UAE GDP, announced its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plan targeted to diversify the country's production base in 1996, exports of non-oil sector reached over 60% of total exports. This remarkable outcome was possible owing to government's effort to set up lucrative investment market by providing general legal structure along with economic policy advancing free market economic principles.

Although there is no separate foreign investment law in UAE, there are main laws concerning foreign investment such as the federal companies law, the commercial agencies law, the federal industry law and government tenders law. Foreigners can do business in accordance with these laws which are simple and straightforward.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income tax except for financial and oil related companies and the fact that there are no restrictions regarding currency accounts, the repatriation of profits and fees,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 of UAE is assessed to be much superior to other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One of the most successful free zone established is Jebel Ali Free Zone in Dubai. In Jebel Ali, 100% foreign ownership is possible with freedom to move capital. In addition, modern and efficient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long with road network provides easy access to major cities within and without the territory. And currently more than 2,200 enterprises from around 100 countries enjoy various privileges in the world class free zone. The recently established Dubai Airport Free Zone and the new Dubai

Technology, E-Commerce & Media Free Zone are providing momentum to this trend, attracting 95% of foreign investment to free zones in UAE.

Sprouting up free zones reveal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to enhance the role of UAE as a leading industrial, commercial and trading center in the middle east taking advantage of strategic location between the trading blocs of Europe and the Far East. And at the same time, this strategy would help diversify sources of government revenues and lessen the dependency on oil. It seems that UAE federal government is making every effort to characterize each free zones and minimize negative aspects from competitive expansion of free zones in different emirates. However, considering constant tension in the middle east region, unstable world oil price could deter this prospect where most of nation's development fund comes from.

KIEP 발간자료목록(1997~2002. 12)

■ 지역리포트

| | | |
|-------|------------------------------------|-----------|
| 00-01 | 금융위기 이후 선전기업을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사점 | 朴英鎬 |
| 01-01 |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 金恩志 |
| 01-02 |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 朴映坤 |
| 01-03 | 유럽경제통합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 鄭厚榮 |
| 01-04 |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 朴映坤 |
| 01-05 |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 河由貞 |
| 02-01 | 중국 장강삼각주 권역의 투자환경 | 吳東胤 · 林泓修 |
| 02-02 | 일본 수입촉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金恩志 |
| 02-03 |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 朴映坤 |
| 02-04 |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 河由貞 |
| 02-05 | 인도 정보기술(IT) 산업 발전현황과 한·인도 IT 협력 방안 | 崔允澮 |
| 02-06 |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裴嬉娟 |
| 02-07 |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의 배경과 시사점 | 權耿德 |
| 02-08 | 東아시아의 産業內貿易 增加 推移와 示唆点 | |
| | - 韓 · 日의 對ASEAN 貿易을 중심으로 | 朴在旭 |

■ 지역연구회시리즈

| | | |
|-------|--|-----------|
| 00-01 |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대: 2000년 러시아 대선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 | 鄭銀淑 |
| 00-02 |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에서 韓半島의 통합적 발전방향 | 吳勇錫 |
| 00-03 | AFTA-CER간 연계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元容杰 |
| 00-04 | 美國經濟의 最近好況에 있어서 IT와 金融化의 役割 | 李榮洙 · 徐煥周 |
| 00-05 | 日 · 北 經濟協力의 展開構圖와 韓國의 對應方案 | 申志鎬 |
| 00-06 |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 朴濟勳 |
| 00-07 | 知識基盤經濟의 구축과 情報화 촉진을 위한 EU의 政策方向 | 蔡熙律 |
| 00-08 |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 張善德 |
| 00-09 | 對日 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 金正湜 |

1990년~현재까지의 모든 KIEP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Homepage (<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 | | |
|-------|--------------------------------------|----------|
| 00-10 |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 | 嚴久鎬 |
| 00-11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 楊平燮 |
| 00-12 | 印度 經濟改革 10年の 評價와 向後課題 | 金讚浣 |
| 00-13 | 東北亞 地域 海洋都市間 經濟協力모델 構想 | 金昌男·千寅鎬 |
| 00-14 |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 高在模·全載旭 |
| 00-15 |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 | 辛源龍 |
| 00-16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 尹玄德 |
| 00-17 | 경제전환기 중·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李殷九 |
| 01-01 |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 金泳世 |
| 01-02 |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朴繁洵 |
| 01-03 |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 李忠烈 |
| 01-04 | 일본의 버블붕괴와 잃어버린 10년 | 姜應善 |
| 01-05 |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 鄭基·虎·李滿基 |
| 01-06 |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 沈義燮·李光勳 |
| 01-07 |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구조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 尹澤東 |
| 02-01 | 우리나라와 미국 주식시장 동조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망 | 李忠彥 |
| 02-02 |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와 한국의 대응 | 程 勳 |
| 02-03 | 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金鍊鐵 |

■ 정책연구

| | | |
|-------|---------------------------------------|---------|
| 97-01 | 美國 클린턴 제2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 王允鍾 |
| 97-02 |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現況과 成果 | 王允鍾 編著 |
| 97-03 | 外國人直接投資의 障礙要因과 促進方案 | 金準東 |
| 97-04 | 中國의 住宅市場 現況과 進出與件 | 崔秀旌 |
| 97-05 | OECD 賂物防止協定에 따른 國內立法現況과 示唆點 | 金鍾範 |
| 97-06 | 電子商去來의 國際的 論議動向과 對應課題 | 李鍾華·李晟鳳 |
| 97-07 | 韓·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對應方案 | 王允鍾·羅秀燁 |
| 97-08 | 中國經濟의 浮上과 韓國의 對應 | 李昌在 外 |
| 97-09 | 東아시아 貿易·投資의 構造變化와 向後 課題 | 金南斗 外 |
| 97-10 |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 趙明哲 |
| 97-11 | 韓·러시아 經濟交流의 現況과 政策課題 | 鄭余泉 |
| 97-12 |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展望과 韓國의 對應課題 | 金元鎬 外 |
| 97-13 | WTO 主要論議 動向과 對應課題 | 金寬浩 外 |
| 97-14 | 中國內 外資企業의 勞務管理 實態와 改善方案 | 趙顯煥 |
| 98-01 | IMF體制下的 韓國經濟(1997.12~1998.6): 綜合深層報告Ⅰ | 張亨壽·王允鍾 |
| 98-02 | 中國 金融改革의 現況과 과제 | 李章揆 外 |

| | | |
|-------|--|-----------------------------|
| 98-03 |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役割 | 王允鍾 · 金琮根 |
| 98-04 | EU 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 지역 적용에 관한 탐색연구 | 權泰亨 外 |
| 98-05 |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 成克濟 |
| 98-06 | 1999년 세계경제전망 | 王允鍾 編 |
| 98-07 | 부문별 조기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 柳在元 · 李弘求 |
| 98-08 |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 李昌在 外 |
| 98-09 |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투자인센티브 | 李晟鳳 · 李炯根 |
| 98-10 |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投資自由地域 | 李晟鳳 外 |
| 98-11 | 統一對備 국제협력과제: 國際金融機構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張亨壽 · 李昌在 · 朴映坤 |
| 98-12 | 臺灣企業의 國際化 戰略과 시사점 | 崔秀雄 |
| 98-13 | 中國 國有企業 改革의 現況, 問題點 및 開展方向 | 徐錫興 |
| 98-14 |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II | Byung-il Choi · Eun Mee Kim |
| 98-15 |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國際金融體制 改編展望에 따른 우리의 대응 | 張亨壽 · 元容杰 |
| 98-16 |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 鄭仁敎 |
| 98-17 | 최근 國際投資 紛爭事例의 研究 | 金寬浩 · 李性美 |
| 98-18 | 通商關聯 電子商去來 論議動向과 示唆點 | 尹昌仁 |
| 98-19 | 中 · 東區 및 CIS지역의 經濟統合 現황과 전망 | 鄭余泉 · 崔秉熙 · 韓貞澈 |
| 98-20 |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투자환경 | 趙明哲 · 洪翼杓 |
| 98-21 |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국제화 전망 | 全載旭 · 崔義炫 |
| 99-01 |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종합심층연구 | 曹琮和 編 |
| 99-02 | 韓 · 브라질 21世紀 協力 비전과 課題 | 金元鎬 編 |
| 99-03 |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 金博洙 · 王允鍾 · 申東和 · 李炯根 |
| 99-04 |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 | 王允鍾 · 鄭在完 · 金琮根 · 李鴻培 |
| 99-05 | 2000년 세계경제전망 | 曹琮和 編 |
| 99-06 |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평가 | 安炯徒 編著 |
| 99-07 |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① 동북아 경제협력: 총괄편 | 李昌在 |
| 99-08 |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②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 鄭仁敎 外 |
| 99-09 |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金益洙 |
| 99-10 | 東아시아 華人經濟와 우리의 華人資本 활용방안 | 崔秀雄 |
| 99-11 | IMF體制下的 韓國經濟 II(1998.7~1999.12): 綜合深層報告② | 黃祥仁 · 王允鍾 · 李晟鳳 |
| 99-12 |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③ 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 | 李晟鳳 外 |
| 99-13 |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④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 王允鍾 外 |

-
- 00-01 WTO 뉴라운드 規範分野의 논의동향과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蔡旭·金準東·宋有哲·尹美京·徐暢培
- 00-02 서비스산업의 開放效果: 業種間 波及效果를 중심으로 金準東·姜仁洙
- 00-03 東歐 經濟體制轉換의 평가와 北韓經濟에 대한 시사점 鄭余泉
- 00-04 WTO 뉴라운드 工產品協商的 시나리오별 實證分析和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李明憲·朱文培
- 00-05 WTO 서비스협상의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金準東·李長榮·李漢煥·金龍奎·崔重熹·許琮·李漳源
- 00-06 WTO 뉴라운드 農業協商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宋有哲·朴芝賢·李載玉·魚明根·任廷彬
- 00-07 韓·칠레 自由貿易協定の 推進背景, 經濟的 效果 및 政策的 示唆點
鄭仁教·李景姬
- 00-08 WTO 서비스규범 관련 論議動向 및 對應方案 蔡旭·金準東·梁俊哲
- 00-09 體制轉換國의 經濟開發費用 조달 趙明哲·權栗·李哲元·金恩志
- 00-10 國際金融體制 改編의 주요쟁점연구 金世植·楊斗鏞·王允鍾·黃祥仁
- 00-11 WTO 新通商議題 영향분석과 대응 尹昌仁 外
- 00-12 中國·베트남의 初期 改革·開放政策과 北韓의 改革方向 趙明哲·洪翼杓
- 00-13 WTO 뉴라운드協商的 전망과 韓國의 協商力 제고방안 蔡旭·崔洛均
- 00-14 선진국 주요 環境裝置가 韓國의 輸出競爭力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尹昌仁·韓宅煥·庾相喜
- 00-15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 李鍾華
- 00-16 農產物 保護費用과 政策示唆點 宋有哲·朴芝賢
- 01-01 무역개방화와 제조부문의 변화 南相烈
- 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教
- 01-03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黃祥仁·金寅培·辛仁錫
- 01-04 韓·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教
- 01-05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金尙謙·朴仁元
- 01-06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내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曹琮和·金子珍
- 01-07 다자무역내 정무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梁俊哲·金鴻律
- 01-08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尹德龍·朴淳讚
- 01-09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李鍾華·朴淳讚
- 01-10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宋有哲 外
- 01-11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환경·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金準東 外
- 01-1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의 시사점 崔洛均 外
- 01-13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협상의 시사점 尹昌仁 外
-

| | | |
|-------|---|-----------------|
| 01-14 |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 蔡旭·徐暢培 |
| 02-01 | DDA 총점검-2002 | 崔洛均 外 |
| 02-02 |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 宋有哲·朴芝賢·李載玉·林頌洙 |
| 02-03 |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시청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金準東·高俊誠·具文謨·朴淳讚 |
| 02-04 |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율 구조분석 | 崔洛均·鄭在皓 |
| 02-05 |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 姜文盛·魯在峯·李鍾華 |
| 02-06 |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 尹美京·崔允僖 |
| 02-07 | DDA 무역과 개발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 南相烈·權栗 |
| 02-08 |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 崔洛均·朴淳讚 |
| 02-09 |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 姜三模·王允鍾 |
| 02-10 | 미국 경상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姜文盛·羅秀燁 |
| 02-11 |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 尹德龍·鄭在植·曹琮和 |
| 02-12 |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의 對中 투자와 일본의 對韓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李彰洙 |
| 02-13 |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 金良姬·趙炳澤 |
| 02-14 | 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 池晚洙 |
| 02-15 | 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 | 權栗·金玠慶 |
| 02-16 | 중국 유통산업 개방과 활용전략 | 趙顯竣 |
| 02-17 | 1990년대 이후 한·미간 무역구조의 변화 | 梁俊哲·金鴻律 |
| 02-18 |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 尹德龍·鄭衡坤·南英淑 |
| 02-19 |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對중동 통상확대 전략 | 金興鍾 |
| 02-20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 - 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李昌在 |
| 02-21 | 韓·中·日 IT 산업의 戰略的 提携 현황과 향후 전략: 知識連繫를 중심으로 | 洪裕洙 |
| 02-22 |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 金鴻律 |
| 02-23 |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현지화에 관한 연구 | 白權鎬 外 |
| 02-24 |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 朴大權·楊斗鏞·吳奎澤·金恩京 |
| 02-25 |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 - 국제산업연관모델에 의한 실증연구 | 李鴻培·岡本信廣 |
| 02-26 | 북한경제 백서 | 趙明哲 외 |

■ 시사분석

- | | | |
|-------|--|-------------|
| 97-01 | 韓國企業의 對中 投資 實態 및 經營成果 分析 | 朴相守 |
| 97-02 |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現況 및 經濟展望 | 鄭在完 |
| 97-03 |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 鄭在完 |
| 97-04 |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가스部門 進出現況 | 李哲元 |
| 97-05 |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送體系 | 徐承源 |
| 97-06 | 메콩江流域 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 | 鄭在完·權耿德 |
| 97-07 | CIS 經濟統合의 推進現況과 展望 | 李聖揆·崔秉熙 |
| 97-08 | 인도네시아의 金融產業: 危機의 背景과 展望 | 金完仲 |
| 97-09 | 中國의 에너지產業 現況과 韓國에 대한 示唆點 | 崔義炫 |
| 97-10 |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日本의 酒稅에 관한 研究 | 蔡 旭 |
| 97-11 |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美國의 「휘발유에 대한 基準」에 관한 紛爭 | 李鎬生 |
| 97-12 | 베트남 國有企業改革의 現況과 課題 | 權 栗 |
| 97-13 | 中國 石油化學產業의 現況과 展望 | 洪翼杓 |
| 97-14 | 中國 株式市場의 現況과 展望 | 金琮根 |
| 97-15 | 中國의 經濟改革과 中央·地方關係 | 朴月羅 |
| 97-16 | 우크라이나의 經濟改革과 外國人 投資制度 | 李炯根 |
| 98-01 | 80년대 이후 日本 通商政策 基調의 변화 | 羅成燮 |
| 98-02 | 金融危機 이후 輸出構造變化와 향후 輸出與件 전망 | 鄭仁教·李昌在 編著 |
| 98-03 | 한국과 멕시코의 외환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조정과제 | 趙潤濟·金鍾燮 |
| 98-04 | 헤지펀드 運用實態와 國別 換投機 事例分析 | 李永雨 |
| 98-05 | APEC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重要인 조사연구 | 鄭聖哲·李明振 |
| 98-06 |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 | 朴成勳 |
| 98-07 |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과 對APEC 정책 | 李載裕·李載榮 |
| 98-08 |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 朴泰鎬·文字植·白珍絃 |
| 98-09 |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 | 孫正植·韓弘烈 |
| 98-10 | APEC 지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방안 | 朴氣弘 |
| 98-11 | 유로貨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통상환경의 변화 | 李鍾華 外 |
| 98-12 |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 | 김애리 |
| 98-13 |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 | 蔡 旭 |
| 98-14 |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미국의 「면직 및 수제내의에 대한 수입규제」에 관한 분쟁 | 蔡 旭·徐暢培 |
| 98-15 |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 金裕燦·李晟鳳 |
| 99-01 | OECD연구시리즈②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李晟鳳·李炯根 |

| | | |
|-------|---|-----------------------|
| 99-02 | 주요 산업별 해외 M&A사례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 金琮根 |
| 00-01 | 투명性 提高를 위한 國際基準 및 規範의 開發과 遵守現況 | 朴映坤 · 金于珍 · 羅秀燁 |
| 00-02 | 주요 이슈별 韓 · 美 通商懸案 政策課題 | 梁俊哲 · 金鴻律 |
| 00-03 | NAFTA의 經濟的 效果分析 : 출범전 展望과 實行效果 比較를 중심으로 | 金元鎬 · 姜文盛 · 羅秀燁 · 金眞梧 |
| 00-05 | 國際協力體 設립을 통한 北韓開發 지원방안 | 張亨壽 · 朴映坤 |
| 01-01 | 싱가포르의 知識基盤經濟 이행전략과 시사점 | 鄭在完 |
| 01-02 | 아프리카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수출확대 방안 | 朴英鎬 |
| 01-03 |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 孫讚鉉 · 尹眞那 |
| 01-04 | WTO 農業協商 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국제기구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 宋有哲 · 朴芝賢 |
| 01-05 | 韓 · 日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 金良姬 · 金鍾杰 |
| 01-06 |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의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 鄭余泉 |
| 01-07 |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 權奇洙 |
| 01-08 |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 權 栗 |
| 01-09 |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 金眞梧 |
| 01-10 |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李哲元 |
| 01-11 | 병행수입에 대한 WTO TRIPS 논의: 공중보건과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 尹美京 · 李性美 |
| 01-12 | 北韓의 시장경제교육 실태와 南北 협력방안 | 趙明哲 |
| 01-13 |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 洪翼杓 |
| 02-01 |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 姜文盛 · 羅秀燁 |
| 02-02 | 아프리카 건설시장 특정분석 및 한국의 시장확대 방안 | 朴英鎬 |
| 02-03 | WTO 농업협상 제2단계 각국 제안서 분석 | 宋有哲 |
| 02-04 |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한국과 일본의 사례 비교분석 | 尹美京 · 李奎億 |

裒嬭媾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졸업(1999)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20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現, E-mail: hybae@kiep.go.kr)

지역리포트 02-06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2002년 12월 20일 인쇄

2002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安忠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 FAX: 3460-1144

인쇄 한라인쇄 (02)503-3011 대표: 박노부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6057-5 94320
89-322-6017-6(세트)

정가 5,000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성과를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 회원종류 | 배포자료 | 연간회비 | | |
|------|--------------|--------|------|--------|
| | | 기관회원 | 개인회원 | 연구자회원* |
| S |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
| A | (반년간)대외경제연구 | 1만 2천원 | | 1만원 |
| B | (월간)KIEP세계경제 | 5만원 | | 2만 5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영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권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遡報(인쇄물), 전문가들 토의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 가입신청서

| | | |
|---------------|-------------|------|
| 기관명 (성명) | (한글) | (한문) |
| | (영문: 약호 포함) | |
| 대표자 | | |
| 발간물 수령주소 | 우편번호 | |
| 담당자 연락처 | 전화 | FAX |
| 회원소개 (간략히) | | |
| 사업자 등록번호 | 종목 | |

회원분류(해당란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 | | |
|--------------------------------|------------|-----------|----------|
| 기관 회원 <input type="checkbox"/> | S 발간물일체 | A 반년간지 | B 월간지 |
| 개인 회원 <input type="checkbox"/> | | | |
|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 | |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